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5-34호

가정통신문

전 화 : 070-4881-3400
창체부 : 070-4881-3415
행정실 : 02-6677-5726

- 봉사활동 유의사항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하심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평소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학년도 본교 봉사 활동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누가기록이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됩니다. 특기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개인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나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현 1학년 학생(2022교육과정)의 생기부 기재 방식의 변경 내용
   가.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하고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한다.
3.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나.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 인정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사는 사전 지도 바람
   다.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이 아니면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뒷면 참조)
   라.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위 3의 실적연계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다. 실적 인정 불가 기관에 대한 판단은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학생]	➡	[학교]	➡	[학생]	➡	[학교]	➡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 기록부

5. 번역
   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나.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6.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모의유엔,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TIMSS,ICILS) 등에서의 활동

나. 기자단 활동 봉사활동

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라.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 식비, 재료비 등)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 경우 불인정

7. 봉사활동 양식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GCFL커뮤니티›각종양식함› 검색 '봉사'하여서 다운 받아 활용

8. 헌혈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 2017학년도부터 학부모 동의서 및 승인서가 없으면 헌혈 봉사활동 실적 인정 불가

나.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를 4시간 인정, 연간 **인정 횟수 3회**까지 인정.

※ 헌혈 학부모 동의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GCFL커뮤니티›각종양식함›헌혈 학부모 동의서 양식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 -

<2017학년도부터 적용, 출처: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VMS)>

인터넷 창 → vms 검색 → 참여 마당 → 봉사활동처 조회 → 센터명 검색 → 검색이 될 경우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단, 활동 내용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 충족하여야 함.)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기관(단체)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조 인증센터의 지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2.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3. 유의사항

- 모든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2025년 3월 19일

과 천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